

경기북부병무지청 일반직공무원(의료기술직) 경력경쟁채용 공고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일반직공무원(의료기술직_임상심리사)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경기북부병무지청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채용기간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일	근무예정기관(근무지)
임상심리사	의료기술서기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적용	1명	'26.12.7.(월)	경기북부병무지청 (경기 의정부시)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임상심리사	의료기술서기	○ 병역·입영·재병역판정검사 시 심리검사 실시 ○ 2차심리검사 대상자 개별면담, 심리검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정밀심리검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심리취약자 등 경과관리 실시 ○ 심리취약자 및 정신건강위험군 유관기관 통보 및 연계 등 ○ 심리검사 도구 관리 및 심리검사 현황 관리 등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 「공무원임용령」 제9조(결원의 적기보충)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6.10.28.) 기준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지원 요건
임상심리사	의료기술서기	정신건강임상심리사(또는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임용예정직위 관련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다.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2026.10.12.) 기준

구분	내용	
우대요건	경력	1. 관련분야 실무경력(기간별 차등 배점 / 최대 4년)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법인)에서 임상심리 관련 실무경력 * 해당 기간 중 종합병원급 이상 근무기간은 제외(별도우대) ** 우대경력은 응시자격요건 충족이후의 경력에 한함 *** 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2. 종합병원급 이상 관련분야 경력(기간별 차등 배점 / 최대 4년) - 의료법 제3조의3 종합병원 또는 제3조의4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관련분야(정신건강의학과) 근무경력 * 우대경력은 응시자격요건 충족이후의 경력에 한함
	자격증 (직무)	직무 관련 자격증 : 임상심리전문가 (한국임상심리학회)
	자격증 (정보화)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등급별 차등 배점) *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프로그래밍기능사),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2012.1.1. 이후 워드자격증 취득자는 1급 자격증 인정 *** 복수 소지 시 유리한 1개만 인정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 경과 등 **효력 상실한 자격증 미인정**

○ 관련분야 근무경력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 제출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주당 업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
 -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 **경력(재직)증명서 필수 기재사항 : 근무부서, 직책,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시간(주40시간 등), 상근/비상근 여부**
 -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담당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근무형태가 정규직, 상근이 아닌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상근 근무 주당 40시간)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 경력은 경력산정을 위하여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명기 제출**
-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해야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 증명서류 및 보완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하여 계산(민법 제160조)
- * 2개 이상의 경력은 별도 계산하여 합산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 참조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서류전형 기준(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 자격 등)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 접수 시 적격/부적격 여부 심사(소극적 전형)
※ 선발범위 내 동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합격 처리(선발예정인원초과)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정요소)

- ① 소통 · 공감 :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 ② 헌신 · 열정 :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 ③ 창의 · 혁신 :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 ④ 윤리 · 책임 :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 9. 30.(수) ~ 10. 12.(월)	'26. 10. 7.(수) ~ 10. 12.(월)	'26. 10. 22.(목)	'26. 10. 28.(수)	'26. 11. 12.(목)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북부병무지청 누리집,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 10. 7.(수) ~ 2026. 10. 12.(월) 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 응시원서는 붙임3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등기우편 접수증으로 응시표 같음),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전화 문자(SMS)로 개별 통보 예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 주소

접수기관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 주소	문의전화
경기북부병무지청	(우)11642 경기 의정부시 전좌로 76 경기북부병무지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임상심리사 응시원서 재중)	031-870-0225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방문접수 : 평일 09시~18시 내에만 가능(12시~13시 점심시간 제외)

나. 제출서류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 분	서 류	비 고
공통사항 (필수제출)	제출서류 목록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6호
	정신건강임상심리사(또는 임상심리사) 자격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학위증명서 각 1부	* 시험위원 기파제척에만 활용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경력(재직) 증명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정보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제출된 원본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6. 12. 7.(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9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빙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북부병무지청 운영지원과(☎ 031-870-0225)로 문의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26.10.22. 개정시행)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6.10.22. 개정시행)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등)】

- ①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 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공직적격성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서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기관(근무지)
임상심리사	의료기술서기	1명	경기북부병무지청

주요 업무	○ 병역·입영·재병역판정검사 시 심리검사 실시 ○ 2차심리검사 대상자 개별면담, 심리검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정밀심리검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심리취약자 등 경과관리 실시 ○ 심리취약자 및 정신건강위험군 유관기관 통보 및 연계 등 ○ 심리검사 도구 관리 및 심리검사 현황 관리 ○ 기타 심리검사 관련 업무 및 병무행정 업무 ○ 필요 시 타 지역 병역판정검사장 이동근무
-------	---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 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 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기획, 전략적 사고, 창의력, 전문성, 정보화능력 등
-------	---

필요 지식	정신병리학 / 성격심리학 / 발달심리학 / 심리평가
-------	------------------------------

응시 자격 요건	자격증	정신건강임상심리사(또는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

우대요건	○ 관련분야 실무경력(기간별 차등 배점 / 최대 4년)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법인)에서 임상심리 관련 실무경력 * 해당 기간 중 종합병원급 이상 근무기간은 제외(별도우대) ○ 종합병원급 이상 관련분야 경력(기간별 차등 배점 / 최대 4년) - 의료법 제3조의3 종합병원 또는 제3조의4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관련분야(정신건강의학과) 근무경력 ※ 우대경력은 응시자격요건 충족이후의 경력에 한함 ○ 직무관련 자격증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 ○ 정보화 자격증 : 등급별 차등 배점 *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프로그래밍기능사),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2012.1.1. 이후 워드자격증 취득자는 1급 자격증 인정 * 복수 소지 시 유리한 1개만 인정
------	--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우대요건"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각각 충족하여야 함

붙임 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 붙임의 「제출서류 목록」과 함께 순서대로 정리하여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필수서류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A4 2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A4 4매 이내로 작성
5. 자격증 사본 1부 : 필수서류	정신건강임상심리사(또는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증 사본 제출 ※ 지원하는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제출
6. 주민등록초본 1부 : 필수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기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으로 출력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필수서류	자필 서명 필수
8.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6호) : 필수서류	자필 서명 필수

구 분	내 용
9. 경력(재직)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별지서식 제7호)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주당 근무시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이력서 작성 시 허위기재, 누락, 부실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작성 ○ 추후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 허위기재한 경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 되어 서류전형 합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10. 직무분야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에만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석사 졸업자의 경우, 학사 졸업증명서도 함께 제출
11.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12. 정보화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제출서류 목록

성 명	채용분야	직급	응시자격요건(해당 ☑ 체크)
	의료기술 (임상심리사)	의료기술서기	☐ 정신건강임상심리사(또는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제출서류(총괄표)

○ 제출유무란 해당란에 “√” 표시, 번호순으로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 제출

목 록	제출여부	
① 응시원서(필수)	☐ 제출	☐ 미제출
② 이력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⑥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필수)	☐ 제출	☐ 미제출
⑦ 정신건강임상심리사(또는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증 사본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⑧ 주민등록초본 1부(필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제출	☐ 미제출
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 - 각 기관발행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제출	☐ 미제출
⑩ 학위증명서 1부(필수) * 시험위원 기피·제척에 활용	☐ 제출	☐ 미제출
⑪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제출	☐ 미제출
⑫ 정보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제출	☐ 미제출

2026. . .

성명 : (서명) ← 서명 필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1호>

(앞 면)

응시원서 (원본)

경기북부병무지청장 귀하

본인은 경기북부병무지청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10월 일

응시원서(원본)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의료기술직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한자)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① 응시번호 : 미기재

-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등기우편 접수증으로 응시표 같음)
- * 우편으로 접수된 응시자의 수험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 예정

②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③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④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⑤ 정부수입인지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 전자 정부수입인지(www.e-revenuestamp.or.kr) 가능
(정부수입인지 구매 시 응시자 성명으로 발급)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직급(분야)	의료기술서기(임상심리사)
성 명			

2. 응시자격

자 격 증	면허(자격) 명칭	면허(자격) 번호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3. 우대요건① [종합병원급 이상 근무경력 제외 / ②에 별도 기재]

경 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 (○○과)	16.1.1 ~ 17.11.5. (22개월 5일)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5.1.~12.31(질병휴직)	과장 (4급)	상세하게 작성	상근/비상근 (주 40시간 근무)

3. 우대요건② [종합병원급 이상 근무경력 기재]

경 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 (○○과)	16.1.1 ~ 17.11.5. (22개월 5일)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5.1.~12.31(질병휴직)	과장 (4급)	상세하게 작성	상근/비상근 (주 40시간 근무)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필수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②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관련 근무경력을 구분하여 기재 * 응시자격요건 충족이후의 경력에 한하여 인정

- 우대요건 ① : 관련근무 경력을 기재 (종합병원급 이상 근무경력 제외)

- 우대요건 ② : 종합병원급 이상 근무경력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 경력(재직)증명서에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이 미기재 되어 있을 경우,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부자료(인사기록카드 등) 증빙 자료 첨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근무기관, 근무기간, 근무월일수,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근무기간 및 근무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개월 및 일 단위로 기재

* 예시) 2015. 1. 1. ~ 2019. 2. 15.(38개월 15일)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상근*/비상근 여부로 표시하고, 주당 근무시간 표시(예 상근 주40시간, 비상근 주3시간)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상근 :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근무일마다 출근, 일정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

*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자격증 우대요건에 해당되는 관련분야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자격증 우대요건에 해당되는 정보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프로그래밍기능사),워드프로세서(구 2급 이상) 및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2012. 1. 1.이후 워드 자격증 취득자는 1급 자격증 인정)
 - * 복수 소지 시 유리한 1건만 인정
 -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화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착오기재,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이력서 작성 시 허위기재, 누락, 부실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작성
- 추후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 허위기재한 경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 되어 서류전형 합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서명 또는 인		응시직급 및 분야	의료기술서기(임상심리사)
-----	--	------------	--	-----------	---------------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아래항목이 포함되도록 작성, 필요 시 추가사항 기재 가능

① 지원동기 및 본인소개

* 공직자 지원동기, 생활신조, 가치관, 성격 장·단점 등

② 직무분야에서의 주요 실적(성공사례) 및 경력개발

* 팀웍·리더쉽·협상능력 발휘로 실적 달성 사례, 직무관련 자기개발 등

③ 소속 구성원(또는 고객)과의 관계

* 직장, 학교 등에서 동료와의 갈등 및 극복사례, 불만민원 처리 등 고객서비스 사례 등

④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

* 본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공직자상, 앞으로의 각오 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직무수행 계획서

성명		서명 또는 인		응시직급 및 분야	의료기술서기(임상심리사)
----	--	------------	--	-----------	---------------

◎ 직무수행계획서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A4용지 4매 이내로 작성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아래항목이 포함되도록 작성, 필요 시 추가사항 기재 가능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분야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 직무에 대한 이해, 소견 및 응시 취지

②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

- 분량은 A4용지 4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 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정의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109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경기북부병무지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에 따른 학력·경력·자격증, 수상실적,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등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학위,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치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논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경기북부병무지청장 귀하

경력 증명서

기 관 현 황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기관형태	☐ 국가 혹은 지자체 ☐ 민법에 의한 재단·사단법인 ☐ 개별법에 의한 법인체		☐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의원 등 ☐ 공사 혹은 공단 ☐ 기타()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근 무 경 력						
입사일자	년 월 일	총 근무년한	년 월 일	고용형태	정규/비정규	
퇴사일자	년 월 일			근무형태	상근/비상근	
퇴직사유	사유 기재			근무시간	주 ○○시간	
근 무 세 부 내 역						
부서명		직급 (직위)	근무기간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술)		
			~			
			~			
상 별 사 항	포 상			징 계		
	년 월 일	종류	기관명	년 월 일	종류	기관명
				담 당 자	(인)	
				확 인 자	(인)	
				문의전화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 ○○○○

직 인

※ 기관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서식을 활용하되,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 발급 담당자,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

<별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희망자에 한함)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응시)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휴대전화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경기북부병무지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